##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8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허성무·김문수·이병진

송재봉 • 이광희 • 양부남

박용갑 • 이재강 • 정진욱

문금주 • 박지원 • 김동아

김 윤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비율은 79%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약 20%는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이용권 수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해당 가구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 속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제8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11조 및 제12조의3"을 "제11조, 제12조의3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 8. 에너지급여

제14조의2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에너지급여) ① 에너지급여는 수급자가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에너지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

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에너지급여"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4조의3"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제</u>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u>제</u>
<u>11조 및 제12조의3</u> 에 따른 급	<u>11조, 제12조의3 및 제14조의3</u> -
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제7조(급여의 종류) ①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8. 에너지급여</u>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	②
급자의 필요에 따라 <u>제1항제1</u>	<u>제1항제1</u>
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	호부터 제8호까지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	
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	
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	
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제1항제</u>	<u>제1항제</u>
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
<u>제7호</u> 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	<u>터 제8호까지</u>

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 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신 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 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 한 이의신청) ① -----

•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u>제14조, 제14조의3</u>
제14조의3(에너지급여) ① 에너지
급여는 수급자가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
을 수 있도록 금전 또는 물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

다.

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 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 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 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 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 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 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생 략)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 제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		
는 에너지급여		
<u>.</u>		
②		
<u>제7조제</u>		
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에너		
지급여		
③ (현행과 같음)		
42조(보장비용)		

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	
용을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	3
조의3, 제13조, <u>제14조</u> , 제15	제14조, 제14
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	조의3
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4. (현행과 같음)

실시 비용

4. (생략)